

제 1164 호
1985. 8.2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
 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 전 화 : 731-6111-3
 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 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	
제 56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2
제 564 호 : 도시계획사업 (고속철도 및 부대시설) 시행허가변경	4
제 565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6
◎ 공 고		
제 501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	6
제 502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	7
◎ 구청공고		
은평구제 36 호 : 관인신조공고	7

공 람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63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고시 제 109,159('85.2.24, 3.19)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홍은동 8-584 ~ 8-241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코자 서공 제451('85.8.5)호로 도시계획법 제 25

조 2에 의하여 실시계획 공람공고 사항을,
2.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장

공람공고	사업의시행지	사업의종류	사업의명칭	사업규모
서울공고 제 451 호	서대문구홍은동 8-584~8-241간	도로 및 하수도	홍은동 8-584~8-241간 도로개설공사	B=6m L=140

<p>가. 사업의시행자: 서울특별시장(서대문구청장)</p> <p>나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'85.6 - '85.12.31</p> <p>다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</p>	<p>소재지, 지부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초서, 참조</p> <p>라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별첨</p>
--	--

토 지 수 용 현 황

지 번	구분	총면적	수용면적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				관 제 인 주 소 성 명	관 제 인 주 소 성 명	
홍은2동 8-591	대지	93	37	홍은농 8-591	유 영 재	
" 8-590	"	53	15	북가좌동 373-2	윤 병 설	
" 8-588	"	89	12	홍은동 8-588	김 진 문	
" 8-587	"	66	14	" 8-587	서 충 남	
" 8-295	"	106	14	" 8-295	매 혜 남	
" 8-296	"	119	16	" 8-296	김 철 환	

지 번	구분	총면적	수용면적	소유자 주소 성명			소유권의세 이권명세
				관계인 주소 성명			
홍은2동 8-299	대지	79	17	홍은동 8-259	유 용 학		
" 8-300	"	69	17	" 11-188	이 석 현		
" 8-302	"	79	27	" 8-302	문 대 준		
" 8-255	"	139	2	" 8-255	서 성 글		
" 8-934	"	1,722	384	국유지			
" 8-862	"	60	25	홍은동 8-862	정 금 옥		
" 8-246	"	69	68	" 8-246	황 공 기		
" 8-247	"	53	21	" 8-761	우 종 구		
" 8-254	"	89	2	" 8-254	정 기 상		
" 8-303	"	89	28	" 8-303	이 진 식		
" 8-306	"	86	18	" 8-306	조 규 철		
" 8-309	"	93	20	서울시			
" 8-310	"	69	15	홍은동 8-411	오 승 선		
" 8-311	"	53	12	" 8-311	이 영 희		
" 8-586	"	89	21	" 8-586	정 찬 길		
" 8-694	"	60	14	" 8-694	곽 진 희		
" 8-585	"	60	13	" 8-585	문 복 이		
" 8-584	"	102	29	마포구신수동 185-2	한 만 중		

건 물 수 용 현 황

지 번	용 도 및 구 조	층수	총 면 적	수용면적	소 유 자
8-300	흙벽돌 류병집	1	24.96	4.0	김 명 세
8-303	세멘트부록조세멘와즙	1	37.92	24.8	이 진 식
8-310	목조세멘와즙	1	24.23	6.6	오 승 선
8-295	세멘부러조 세멘와즙	1	53.55	6.9	매 예 날
8-296	목조세멘와즙	1	28.93	10.3	남 상 재
8-590	흙벽돌조세멘와즙	1	24.23	7.15	윤 병 섭
8-586	목조세멘와즙평가전	1	23.14	15.0	정 찬 길
8-585	목조세멘와즙	1	17.98	7.9	장 익 서
8-694	흙벽돌세멘와즙	1	27.8	13.6	정 달 목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64 호

도시계획사업 (고속철도및부대시설)
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9 호 (85.6.19) 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옥수, 압구정, 동작 및 사당정거장에 대한 사업시행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 호 (83.2.23), 동고시 제 104 호 (83.2.23), 동고시 제 544 호 (83.10.20) 로 사업시행허가된 사항중 일부구간 토지조서 변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446 호 (85.8.2) 로 공람공고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과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 1 호의 마목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하고 동법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지하철 3.4 호선 건설공사
- 명칭 : 지하철 3.4 호선 고속철도 본선 및 정거장 인입선 건설사업

나. 사업시행면적

- 당초 : 18,700 ㎡
- 변경 : 20,334.3㎡ (중 1,634.3㎡)
 - 추가편입 시행지
 - 성동구 옥수동 369 일대
 - 강남구 압구정동 산 42-3 일대
 - 동작구 동작동 126-5 일대
 - 동작구 사당동 581-1 일대
 - 강남구 반포동 영동제 1 지구 산 34-2
 - 중구 필동 3 가 28-1 일대
 - 중구 필동 1 가 51-23
 - 추가시행지 물건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18
-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사장 김재명

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

-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7 일 이내
- 준공년월일 : '85.10.30

마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 (대표전화 583-8923-9) 에 문의하기 바란다.

토 지 조 서 (추 가)							
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(㎡)	전입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의 이외의 권리명세	
				관	제인주소성명		
옥수동 78의 1	전	1,176	80	.	서울시		
" 78	전	566	80		"		
" 168의 1	철도	19,050	340	국유지	철도청		
신사동 610의 11	대	104.2	15	신사동 589의 19	서병용		
동각동 125의 9	대	228	228	국유지	국방부		
토 지 조 서 (변 경)							
구분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(㎡)	전입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의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	제인주소성명	
남 초	필동 3가 28의 1	대	670.8	375	한남동 60의 14	우승환	지하권
	반포동영동제 1지구 산 34의 2	대	7,564	1,984	종로구명륜동 1가 29번지	조석래	.
	필동 3가 28의 1	대	670.8	350	한남동 60의 14	우승환	지하권
변 경	필동 3가 28의 1	대	670.8	25	"	"	완전수용
	필동 3가 28의 43	대	3	3	"	"	"
	반포동영동제 1지구 산 34의 2	대	7,564	1,909	종로구명륜동 1가 29	조석래	지하권
	반포동영동제 1지구 산 34의 2	대	7,564	75	"	"	완전수용
	필동 1가 51의 23	대	4.3	4.3	필동 1가 54	뒤매일	.
					남대문로 2가 10 의 1	경계산문사 뒤서울 신탁은행	저당권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65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'73.12.1)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4 호 ('85.7.18) 로 사업계획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 415 호 ('85.7.25) 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(변경)인가내 용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한 주택개량재 개발 현저 3 구역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있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장

가. 고시내역

- 1)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재 개발사업
- 2) 시행구역및 면적 : 현저 3 구역
141,474 평방미터
- 3)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- 4) 시행인가년월일 : '86.12.30 일
로부터 '86.12.30
- 5) 사업인가관계 도서 : 별첨 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01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 조 (제 13 조) 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218 호 (81.6.13) 로 재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장

공 고 및 공 람 개 요

1. 사용개시년월일 : 1985.9.12
2. 배수구역 : 회현배수구역

- 3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일대
- 4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: 합류식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02 호

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 문계획
일부변경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4 ('85. 3.8)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한바 있는 주택개발 재개발 현저 3구역의 일부토지에 대하여
- 2.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동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공람공고한다.
- 3. 동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,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 우편송달할것이나,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하며, 관계 도서는 종로구청 (주택과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장

- 가. 명칭 : 주택개발 재개발사업현저제 3구역
- 나. 위치 : 종로구무악동 7번지일대
- 다. 면적 : 116,482.3 평방미터
- 라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마. 관리처분계획내용 : 별첨 (생략)

구 청 공 고

◎ 은평구공고제 36 호

관 인 신 조 공 고
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용)신조사용을 승인하였기에 동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5.8.28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- 1. 관인명 : 불광3동장, 역촌1동장, 역촌2동장 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용)
- 2. 사용개시일자 : 1985.9.1 09:00

3. 관인의 인명 : 아 래

구 분	불광 3 동	역촌 1 동	역촌 2 동
일반사무용			
민원사무용			
계 인			
도급경비 출납원			
전도자금 출납원			
분입수입금 출납원			